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53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달희·고동진·김정재

엄태영 · 임이자 · 유용원

김상훈 • 박준태 • 이인선

김위상 · 신동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제4항).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2제3항 신설).
-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환원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3 신설).
-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임시회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 조).
-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 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210조).
- 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해당 회기 가 끝나야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여 예산 의결 기한을 별도로 규정 하도록 함(안 제210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제4항 중 "국가"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 "위임이"를 "이양 또는 위임(이하 "이관"이라 한다)이"로, "위임을"을 "이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이"를 "이관이"로 한다.

제199조의2 및 제1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시·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 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 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0조 후단 중 "위임을"을 "이관을"로 한다.

제202조제2항 후단 중 "위임에"를 "이관에"로 한다.

제205조제3항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 3.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 가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제209조제2항 본문 중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0조 단서 중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을 "제4 0조제1항제2호"로, "제6장제1절제1관"을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6장 제1절제1관"으로,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를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9조(설치) ① ~ ③ (생 략)	제199조(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	4
기 위하여 <u>국가</u> 또는 시·도	<u>규약이 정하는 바에</u>
사무의 <u>위임이</u> 필요할 때에는	<u>따라 국가이양 또는 위임</u>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	(이하 "이관"이라 한다)이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u>위임</u>	<u>이관</u>
<u>을</u> 요청할 수 있다.	<u> </u>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	5
는 시·도 사무의 <u>위임이</u> 포함	<u>이관이</u>
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	
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
	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

<u>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u> <u>있다.</u>

② 국가 또는 시·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특별지방자 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 다.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

<신 설>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 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 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u>위임을</u> 포 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
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
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u>있다.</u>
제200조(설치 권고 등)
<u>이관을</u>

제202조(규약 등) ① (생 략) 제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u>위임에</u>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ㅈ ·② (생 략)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별지방</u> 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 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	202조(규약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u>이관에</u>
	③ (현행과 같음)
제	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u>
	호의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
	<u>방공무원</u>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
	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
	견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제209조(해산) ① (생 략)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 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 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 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 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파견
된 사람
제209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입
<u>한</u>
<u>다</u> . <u><단서 삭제></u>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
정의 준용)
78 에 한 장)
·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u>제40조제1항제1</u>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u>제6장제1절제1관</u>,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u>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u>,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1항제2
<u>ŏ</u>
<u>제54조제1항 및 제2항,</u>
제6장제1절제1관
<u>제6강제</u>
<u>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u>
<u>.</u>